

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(제76조 관련)

1. 설치기준

- 가. 1개를 설치할 것
- 나. 등광색은 백색일 것
- 다. 위치
번호판을 비추도록 설치할 것
- 라. 표시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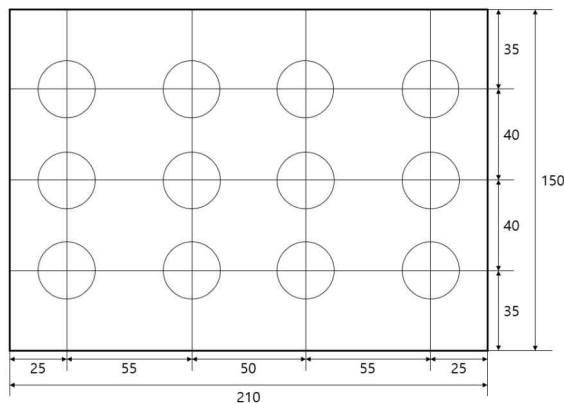
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.

마. 그 밖의 기준

- 1)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.
- 2)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.

2. 휘도기준

가. 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



주)

- 1. 단위: 밀리미터
- 2. ○: 휘도 측정점(지름 25밀리미터)
- 3.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

다.

나. 휘도 기준

- 1)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매제곱미터 2칸델라($2\text{cd}/\text{m}^2$) 이상일 것. 다만,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± 20 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.
- 2)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(cm)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. 다만,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.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.

$$\frac{B_2 - B_1}{(1, 2 \text{ 측정점 사이의 거리})} \leq 2 \times B_0$$

B_0 = 측정된 최소휘도값

B_1, B_2 =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값

- 3) 삭제 <2026. 6. 5.>